

지 용 알 기

(전화번호 307)

전결규정 조 항
전결사항

유기물
부서번호 1817-
처리기관
시행일자 1979. 9. 9
보존년환

보 제 1부시장
조 기획관리관
기 법무담당관
관 설계계장
기안제임자 김광식 1979. 9. 9

협 제 2부시장
조

경 유 수 신 참 조 각 안 참 조 발 신 동 계

제 목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장사무처 규정중 개정 규정

제 1 안 내 부 결 제 (총령제 42) 8

1. 결원 과료로 처분 기준은 안종별 유반사항별
의종별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

2. 구체적 처분정형이 있어서 누락 또는 상습적
유반 과 안종가 급수흐름의 경우 결원 기준을 적용함이

있어 사실상 문제가 있는 바, 결원 기준을
유반 과 안종가 급수흐름의 경우 결원 기준을 적용함이

0201-1-8A 190mm×260mm 40g/m²

1989. 11. 10. 승인 0173

총령

불개
9. 9
지장

김광식

판단하여 누설 또는 상습적 사함을 가중처분하고, 임종간
구수 혼용의 경우 처분 비율을 정함하여 과태료 부과의
의견을 기하고자.

4.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상수도 과징사무처
의 규정을 개정하여 시보에 게재 별첨코자 함이다.

첨부 1. 훈령안 1부

2. 개정규칙 1부

3. 조문대비 1부

4. 업무 1201-4320 (가. 9.3)호 1부 끝

제 2 안

수신 문화공보실장 발신 법무담당관

제목 시보 게재 의뢰

서울특별시 상수도 과징사무처가 규정중 개정규정을 별첨과
같이 송부하오니 시보에 게재 별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훈령안 1부 끝

제 3 안

수신 업무과장 발신 법무담당관

업무 1201-4320 (가. 9.3)호 개정요청하신 **별**

첨부시 상수도 과징사무처의 규정을 별첨과 같이 개정, 시보에 거
게 별첨하기로 결정되었기 문헌하오니, 시행에 착수하시기
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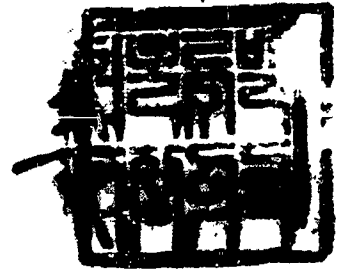
첨부 훈령안 1부 끝

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규정중 개정

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

1975년 9월 9일

서울특별시 장구 라



훈 명 언

서울특별시 훈명제 2

서울특별시 상수도 국경 사무 처별 규정중 제경 규정

서울특별시 상수도 국경 사무 처별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60 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1) 조별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국경로 기준 기준은 별표 제 2호와 같다.

다만 누설 또는 상습적인 경우에는 5배까지 과할 수 있으며, 급수를 곤란하여 조별 제 30조 제 4항에 의하여 높은 요율의 언중으로 국경로 기준을 내어는 별표 제 2조의 국경로 기준 비율을 공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일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계 정 사 유

1. 현행 국태표 저본 기준은 언종별로 인정 배수를 확정시켜 규정하고 있는 바
2. 수법 또는 송신각연 부정 금수에 대하여서는 각종 처벌 규 필요 하였으며
3. 금수물 혼용 학의 조약 제 30조 제 4항에 의한 높은요율의 언종으로 국태표 저본하는 경우에는 거로정본 낮은 언종에 대한 사용료 까지 포함한 저본 이드로 성할며하여 그 저본 배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처징에 제 계통권을 부여.

조분 선구 대조표

의 의	기 정
<p>제 60 조 (과비료 처분 기준) (1) 조 때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과비료 처분 기준을 별표 제 2호와 같다.</p> <p>(2) 별표 제 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처분에 따하여는 조 제 41조 규정에 의한 최고의 비율로 처분 하여야 한다.</p>	<p>제 60 조 (과비료 처분 기준) (1) 조 때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과비료 처분 기준은 별표 제 2호와 같다. 다만 수분 또는 상습적인 경우에는 5배까지 과할 수 있으며, <u>금수물 혼용 하역조</u>에 제 30 조 제 4항에 의하여 높은 표준치 인종으로 과비료 처분할 때는 별표 제 2호의 과비료 처분 비율을 공감할 수 있다.</p> <p>(2) <u>분양과 동일</u></p>

(참고 자료)

법표 제 2호

국책 토지분기론

처분종류	예향종류	국책 토지	
		조약 제 41조 제 1항	조약 제 41조 제 2항
금수토용	39-1-2	포탄기구에 금수 추정 사용량에 대한 요금용 다음 의 비율로 산정	
부정금수공사	39-1-3	1. 가사용: 2년 2. 기막업종: 3년	조약법표 제 1 호에 의한 가입은 다음의 비율로 산 1. 가사용: 2년 2. 기막업종: 3년
양수기 작동방에, 원산, 무단삼거	39-1-4		
무역가 특수 가양 시설 설치 운영	39-1-5		
시설 소확전의 무단사용 봉담 막은	39-1-6		
경수처분 수권 무단 개전 사용	39-1-7		
요금 또는 수수료로 리할 목적으로 사적 기막 부정 행위를 한자	39-1-8		

개 정 사 유

1. 원형 과태료 처분 기준은 업종별로 임정 배수를 한정시켜 규정하고 있는 바
2. 누별 또는 상습적인 부정 급수에 대하여서는 가중처벌 할 필요가 있으며
3. 급수를 혼용하여 조례 제 30조 제 4항에 의한 높은요금의 업종으로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 조정된 낮은 업종에 대한 사용료 가지 포함한 처분
이므로 불합비하여 그 처분 내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상건업집
제량권을 부여.

훈 령 안

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

서울특별시 상수도 과징 사무처리규정중 제정 규정

서울특별시 상수도 과징 사무 처리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60 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1) 조령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별표 제 2호와 같다.

다만 누범 또는 상습적인 경우에는 5배까지 과 할 수 있으며, 그 수를 혼용하여 조령 제 30조 제 4항에 의하여 높은 요율의 인종으로 과태료

처분할 때에는 별표 제 2호의 과태료 처분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조분 신품 대조표

연 항	기 정
<p>제 60 조 (과비료 처분 기준) (1) 조 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과비료 처분 기준을 별표 제 2호와 같다.</p> <p>(2) 별표 제 2호에 규정되지 아니 한 처분에 대하여는 조법 제 41조 규정에 의한 최고외 비율로 처분 하여야 한다.</p>	<p>제 60 조 (과비료 처분 기준) (1) 조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과비료 처분 기준 은 별표 제 2호와 같다. 다만 수분 또는 상습적인 경우에는 5 배까지 과 할 수 있으며, 급수를 혼용하여 조법 제 30 조 제 4항에 의하여 높은 유출의 인공으로 과비료 처분할 때에는 <u>별표</u> <u>제 2호의 과비료 처분 비율을 적용할</u> <u>수 있다.</u></p> <p>(2) 연항과 동일</p>